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연 월 일	2023. 6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송사가 차주에게 제공하는 화물위탁증의 거래이력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, 차주 처우 개선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실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송사가 차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위탁증에 기존에는 ‘운임’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나,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화주의 운송사 지급운임 및 운송사의 차주 지급운임을 표기토록 구체화하고 또한 화물위탁 이력을 명시토록 하여 차주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21조의 4제1항제7호·제7의2호·제7의3호)
- 나.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주차장,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여 휴게소 설치 요건이 까다로웠으나, 이를 완화하여 주차장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2개 시설만 구비하면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함(안 별표6의2 제7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화주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
- 7의2.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위·수탁차주 또는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
- 7의3.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의 위탁 이력

별표 6의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주차장을 구비하고, 추가적으로 휴게실, 샤워실, 식당, 정비소, 주유소(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) 중 2종 이상을 구비할 것
--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4(화물위탁증의 발급) ① 법 제11조제13항 본문(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“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·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6. (생략) 7. 운임 <신설> <신설> 8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제21조의4(화물위탁증의 발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화주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7의2.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위·수탁차주 또는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7의3.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의 위탁 이력 8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